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유서

성명	한글 박요섭	일본명	
한자	朴 姚 燮	イハク	명
출생일자	1897년 1월 16일	시기	1919년 3월 4일
보직	平安南道 江西郡 雙龍面 多足里 219번지 [1919년 주소]		
	1904년 이전		
	1897. 1.16	<p>출생 (陸軍憲兵伍長佐藤實五郎外四名敍勳ノ件, 서훈 권6, 내국인6, 1919)</p>	
	1904년 ~ 1945년		
경력	1917. 4. 1	<p>헌병보조원이 되어 평양헌병대 평양헌병분대에 배임 (陸軍憲兵伍長佐藤實五郎外四名敍勳ノ件, 서훈 권6, 내국인6, 1919)</p>	
	1917. 5.30	<p>헌병보조원 7등급으로 승급 (같은 자료)</p>	
	1917.11.30	<p>동 6등급으로 승급 (같은 자료)</p>	
	1918. 5.31	<p>동 5등급으로 승급 (같은 자료)</p>	
	1919. 3. 4	<p>평양헌병분대 사천주재소에서 시위 진압에 종사 중 사망 (같은 자료)</p>	

조사내용

1.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와 관련하여

1) 삼일운동 당시 시위 군중을 살상함

▶ 「陸軍憲兵伍長佐藤實五郎外四名敍勳ノ件」, 『서훈』 권6, 내국인6, 1919; 『동아일보』, 1921년 3월 28일, 9월 16일, 18일, 10월 24일, 1922년 4월 8일, 28일, 5월 15일, 10월 22일; 『독립신문』, 1921년 4월 9일, 11월 11일, 1922년 5월 27일, 10월 30일.

1919년 3월 4일 평남 대동군 금제면 원장리 장날에 그 지방 일대 민중 3,000명 이상이 공립보통학교와 야소교 교회당에 집합하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강서군 반석면 상사리 사천시장 방면으로 시위 행진할 때, 현병보조원 박요섭은 산적현병주재소 소속 주재소장 사토(佐藤實五郎) 상등병과 조선인 현병보조원 김성규(金聖奎), 강병일(姜炳一) 등과 함께 시위민중을 향해 발포하여, 조선인 13명을 사살하고 40명에게 중경상을 입힘.

▶ 『동아일보』, 1921년 3월 28일, 9월 16일, 18일, 10월 24일, 1922년 4월 8일, 28일, 5월 15일, 10월 22일; 『독립신문』, 1921년 4월 9일, 11월 11일, 1922년 5월 27일, 10월 30일; 『獨立運動史資料集』 5권, 국가보훈처, 789~797쪽, 10권 756쪽, 14권 939쪽; 『獨立有功者功勳錄』 3, 국가보훈처, 955~957쪽.

1919년 3월 4일 사천시장 일대에서 만세운동을 하는 시위 군중을 사살한 현병보조원 박요섭, 김성규(金聖奎), 강병일(姜炳一), 사천현병주재소장 사토 상등병은 시위 군중에게 죽음을 당함.

【참고사항】 조진탁

- 출전: 『獨立有功者功勳錄』 3, 국가보훈처, 955~957쪽.

당시 시위군중 가운데 조진탁(趙振鐸)은 아들 2명이 사살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헌병들을 죽이고 주재소를 방화하는 데 주도적으로 참가하였으며, 사건 이후 타지로 피신하였다가 1921년 3월 19일 원산에서 일경에게 체포되어, 1922년 10월 17일 평양감옥에서 교수형을 당함.

(조진탁은 1963년 건국훈장 국민장을 추서 받음)

2. <특별법> 제2조 제19호(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와 관련하여

1) 일본 정부로부터 훈포상을 받음

▶ 「陸軍憲兵伍長佐藤實五郎外四名敍勳ノ件」, 『서훈』 권6, 내국인 6, 1919.

3.1독립운동 시 평남 사천에서 시위민중을 다수 살상하고 시위대에 의해 사망한 것이 공적으로 인정되어 일본정부로부터 1919년 9월 11일 육일장(旭日章) 8등이 서훈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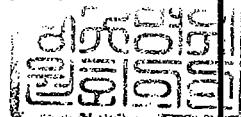


판 단

- 박요섭은 1919년 3.1운동 시 평안남도 사천에서 만세시위에 나선 조선인 시위군 중에게 발포하여 13명을 사살하고 40여 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이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에 해당한다.
- 위의 공적을 인정받아 박요섭은 일본정부로부터 1919년 9월 11일 육일장(旭日章) 8등을 받았는데, 이는 <특별법> 제2조 제19호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상의 조사 내용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박요섭은 우리 민족 구성원을 탄압하는 최일선기구인 조선주둔일본군 현병대에서 현병보조원으로서 적극 앞장서 일제에 협력하면서 3·1운동에 나선 조선인들을 무차별 살상하였으며, 그 공적으로 인해 일본 정부로부터 서훈을 받았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박요섭의 행위를 <특별법> 제2조 제3호, 19호에서 정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다.



2006년 9 월 12 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